

## 요 약

###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재 건설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임.
  - 동 법에서는 건설업을 5개의 종합건설업과 25개의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등록 조건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건설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으나, 현재 「전기공사법」 등 독립적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특정 업역의 예외적 보호 규정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려 했으나, 관련 주무 부처 및 사업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특정 업역의 제도적인 보호 규정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특정 업역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 등록 이외에 해당 부처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업종을 또다시 등록해야 하는 중복적인 규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건설업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 등이 가세하면서 소관 부처별로 특정 업종·업역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규제 등이 과잉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 관련 업종이 다기화되거나 중복 규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는 결국 건설업역간 충돌로 이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면서 건설산업 선진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더구나 최근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업역 다툼과 업역 분리, 특정 공종의 분리 발주 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설산업 구조의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규제 체계의 선진화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건설 시공 관련 업역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요자(건설 서비스 소비자) 위주의 건설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2장 건설업종 등록의 분산 및 다기화 실태와 문제점

### 1. 건설업 등록의 분산 및 다기화 실태

#### (1) 건설업 등록 체계

- 건설업의 종류와 업무 범위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면, 건설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됨.
  - 등록 기준상의 차이점은 단순 시공 이외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업무의 수행 여부이며,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으로 등록 기준을 차별화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

사업의 5개 업종이 있으며, 등록 조건은 기술자 5~12인 이상, 자본금 5억~24억원 이상임.

- 전문건설업은 주로 하도급을 통하여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등록 조건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2~5인 이상, 자본금 2억~6억원 이상이 일반적임.

## (2)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건설 업종 실태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단서 조항에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이 건설업종의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다음과 같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독립적인 업종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임.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 문화재수리업(「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 2. 건설업종 등록의 다기화에 따른 문제점

### (1) 하도급 보호 규정 미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일부를 다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하도급할 수 없음.
-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동일 업종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만약 전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현행 개별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이나 노임 및 설비비 등 실공사비 저하 등과 같은 폐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2) 감리·감독의 다기화 및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 토목, 건축 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감리를 추가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상승과 더불어 감리 업무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 결과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축, 토목 이외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감리가 별도로 활동하면서 업무 중복이나 간섭 현상 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나아가 개별 법에서 개별 업종별로 감리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감리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음.

### **(3) 하도급 보호 규정 등의 미적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건설업종으로 분류되지 못함에 따라 동 업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 공사 등에 대한 행정 처벌이나 하도급 보호 등에 대한 법령 규정이 미적용되고 있음.

### **(4) 건설 관련 행정 체계의 정합성 부족**

- 전기공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공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를 하였거나 계약 이행 부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행정 제재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함.
- 해당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부실 공사 등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강도가 미흡하고 서로 상이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5) 분리 발주로 귀결 - 공사 효율 저하 및 하자 책임 분쟁 해결 곤란**

- 「국가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의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리 발주가 의무화되면서 공사 발주 방식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재량을 제약하는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거래 비용 상승, 국가 예산 낭비 초래, 공사 관리 및 하자 책임 관련 분쟁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제3장 「건설산업기본법」 이외 유사 건설업종의 신설 및 문제점

-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건설업종으로 시공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또다시 유사한 시공 업역을 신설하면서 건설업 등록 체계가 교란되고, 중복 규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과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유사 건설업종은 다음과 같음.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환경부)
  -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석면해체·제거공사업(산업안전기본법, 노동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하수도법, 환경부)
  -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주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택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벗어나 법률의 다기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

#### 1. 업종 등록의 중복 규제

- 환경부에서 신설한 업종인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시공업, 환경전문공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업으로 규정된 ‘산업환경설비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음.
  - 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석면해체제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

- 결과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업종 신설은 또 다른 행정 규제로서 건설업계에는 부담으로 직결됨.
-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응찰이 가능했던 공사에 대해 새로운 개별 법령상 업역을 추가로 등록하고 관련 등록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임.

## 2. 입찰 참여의 인위적 금지

- 법적으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되나, 2011년 이전에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건설공사에 관한 자격을 허용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 개별법에서 규정한 업종 등록업자로 입찰을 제한할 경우,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개별법상의 등록업체 수가 적어 독점 혹은 과점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됨.

## 3. 개별 법령의 정합성 부족

- 개별 법령마다 등록 기준, 시공 관리, 하도급 규정, 벌칙 등의 조항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이며, 이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는 발주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실 공사를 막을 재하도급 방지 등의 안전 장치도 갖추어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일례로 「산림자원조성관리법」을 보면 재하도급 금지 조항이 없음.

## 제4장 해외 사례

### 1. 미국

- 미국은 주정부(state government)마다 다양한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 갖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주요 주정부에서는 건설업종을 일반 토목건설업, 일반 건물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체계를 살펴보면, 전기(Electrical), 방화(Fire protection) 관련 공사, 석면 제거 공사가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미시시피주의 건설업 면허 체계를 보면, 전기공사(Electrical work)를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종으로는 전자 및 컴퓨터 설치(Electronic and Computer Install), 정보통신 시설(Communication Systems)을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소방 시설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Fire Sprinkler Work), 보안설비 시스템(Alarms Systems and Equipment/Access Systems /Security), 석면 제거 철거 공사(asbestos Abatement or Removal) 등을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버지니아주에서도 전기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전문건설업이 아니라 별도 분류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 분류에서는 전자정보통신 서비스(Electronic/Communication Services), 스프링클러 설치(Fire Sprinkler Work), 석면(Asbestos) 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 2. 일본

- 일본의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없이 28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종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토목공사업의 업무 예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에서 시공 업역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치산(治山) 공사, 임도(林道) 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토목사업의 업무 범위에서는 운동시설 정비 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설치업의 업무 범위 가운데 놀이시설 설치, 무대장치 설치, 입체 주차장 설비 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청소시설업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 공사,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경공사업에서는 식재 공사, 잔디 등 지피(地被) 공사, 공원설비 공사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건설 시공 업역과 관련된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어하고 있음.

## 3. 산업 분류의 국제 비교

-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건설업 내 세부 분류를 살펴본 결과, 건설업은 모든 국가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보면, 건설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 내에 전기설치공사업 (432 Electrical, plumbing and other construction installation activities, 4321 Electrical installation)이 포함됨.
- 북미의 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설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 내에 전기설치공사업 (23821 Electrical Contractors and Other Wiring Installation Contractors, 238210 Electrical Contractors and Other Wiring Installation Contractors)을 포함시킴.
- 일본의 표준산업분류를 보면, 건설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 내에 전기공사업(081 ELECTRIC WORK, 0811 General electric work, 0812 Electrical cable-wiring work)과 정보통신공사업(082 TELECOMMUNICATION WORK AND SIGNAL SYSTEM WORK, 0821 Telecommunication work, except Cable TV broadcasting equipment installation work, 0822 Cable TV broadcasting equipment installation work, 0823 Electrical signal system work)이 포함됨.
- 유럽의 표준산업분류를 보면, 건설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 내에 전기설치공사업 (432 Electrical, plumbing and other construction installation activities, 4321 Electrical installation, 4322 Plumbing, heat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4329 Other construction installation)을 포함시키고 있음.
- 한국도 「통계법」상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준용하고, 통계청에서 건설업 내 세부 산업 분류에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반면, 건설업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산업분류 체계와 합치되지 않음.

## 제5장 건설 관련 업종의 통합 및 일원화 방안

### 1. 건설 시공 업역의 분산 및 다기화의 원인

- 정부 조직 내의 부처 이기주의(departmentalism or sectionalism)는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보다는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 확보를 우선함으로써 부처간 이견의 조정(coordination)과 통합(integration)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대응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역기능적 현상을 의미함.
  - 건설 시공 업역의 분산 및 다기화 문제도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에 기인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종을 분류하고 등록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음.
- 환경전문공사업이나 산림토목업, 석면제거공사업 등 유사 건설업종이 신설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들 해당 업종의 단체나 관련 부처에서는 업종 신설의 이유로 전문적인 자격 규제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환경부나 산림청,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 통합의 필요성

#### (1) 다기화 및 칸막이식 규제의 문제점

- 국내 건설산업의 규제 체계는 시장 원리보다는 국가 주도에 의한 산업 발전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형성되어 왔고, 그 이후 고착화되어 건설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업역주의가 공고화되어 있는 상태임.

- 특히,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의 다기화는 진입 제한, 분리 발주, 그리고 원·하도급 자격을 둘러싼 규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내 비효율성 및 산업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경향이 강함.

- 전통적인 칸막이식 규제 체계에 의해 건설산업의 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되면서, 결국 시장 성과(performance)가 낮아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

- 실제 칸막이식 규제 체계는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와 결합하여 중·장기적 산업의 발전보다는 가시적인 단기적 이익에 편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점진적인 규제 개선 위주의 논의만 진행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2) 일원화된 규제 체계의 필요성

- 국내의 건설업 등록 체계를 살펴보면, 동일 사업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과 같은 일부 공종들은 각기 다른 부처의 법 체계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이는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의 저하, 추가적인 이전 비용(transaction cost)의 발생, 예산 절감에 불리, 공사 간섭 현상 발생, 중복 규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건설업과 유사한 시공 업역이 타 법률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육성 및 선진화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효과가 미약해지고, 정책 목표간 충돌이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거나, 철폐 또는 개선되어야 할 규제 및 제도가 존속하게 되고,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의 고착으로 귀결될 수 있음.

### 3. 타 산업의 유사 업종 통합법 제정 사례 검토

#### (1) 「공업발전법」(현 「산업발전법」, 제조업)

- 공업 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 발전 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 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정된 7개의 법(「기계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철강공업육성법」 및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을 통합하는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였음.

#### (2) 「전기통신사업법」(통신업)

- 기간통신 역무는 전화 역무, 가입 전신 역무, 인터넷 접속 역무, 전기통신 회선 설비 임대 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 7개 역무로 구분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전기통신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에 관계없이 부가통신 역무로 지정되었으나, 기간통신 역무는 2010년도 법 개정을 통하여 단일 역무로 통합되어 통신 사업에 있어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틀이 마련되었음.

#### (3) 「자본시장통합법」(금융업)

- 정부는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통하여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 하에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 범위는 「은행법」, 「보험업법」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5개 모든 법률을 6개 법률로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구조임.

#### 4.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 (1) 전기공사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종으로 신규 편입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논리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음.
- 외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공사나 소방시설공사 등을 건설업종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법적인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됨.
- 시공 관련 건설업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하여 가칭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그렇지 않으면,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을 폐지하고, 주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편입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의 등록 조건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 처벌 요건 등을 일원화할 수도 있음.
- 한편, 「전기공사업법」 등을 폐지하고, 건설 시공 관련 업역을 통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차선책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업종의 특정 공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하되, 등록 조건이나 행정 규정은 개별법으로 일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분리 발주 의무화와 같은 경직된 규정을 폐지하고, 공

사 발주 방식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됨.

**(2) 유사 건설업종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에서 유사 건설공사 업종을 신설하여 시공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요구됨.
- 토목공사업의 경우 산림토목, 임도, 치산치수 사업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구분 하고 있는 건설업종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시켜야 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수 질오염 방지시설, 하수 재이용시설 등을 포함시켜야 함.
-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 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본의 건설업 등록제도를 참조할 때 ‘착정공사업’을 신설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처리시설시공업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나, ‘청소공사업’을 신설하여 시공 자격을 부여하 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음.
-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거하여 유사 건설업종 신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역 분쟁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 된 건설업종 가운데 업역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자격과 관련된 업역 분쟁을 해소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토목공사업 업무 범위에 치산(治山) 공사, 임도(林道) 공사, 사방 사업, 사태 방지 공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자연환경 보전이나 훼손 방지, 복원 복구 시설,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옥상 녹화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함.
- 석면 해체 제거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
- 일본의 「건설업법」에 규정된 건설업종의 업무 범위를 참조할 때,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놀이시설이나 무대장치, 도로 방음벽 공사, 입체 주차장 설비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